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우리네 아이들』 서기 1990년 12월 26일 인쇄 12월 30일 발행일 제4권 2호 통권 8호

우리네 아이들

1990년 12월 제 8 호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전경숙 .

우리네 아이들

짜 임 새

권두언 / 2

90년 한해를 매듭하고 동터오는 91년을 맞이하며

김경태 회장

사진으로 본 탁아입법 활동 / 4

기획 / 10

민자당 영유아의 보호·교육에 관한 법률(안) 무엇이 문제인가

90년 어머니대회에 참가하고 나서 / 15

어린이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윤인중 아빠

시 사 / 17

“우루과이라운드를 온몸으로 거부한다”

편집부

탐 방 / 직장시범탁아소 22

‘동양복장 아가의 방’을 찾아

편집부

알아봅시다 / 외국탁아제도 25

일본의 탁아제도

편집부

여성칼럼 / 29

아내라는 이름의 여성

이일순

생활문화 / 30

식품 첨가물에 찌든 우리의 식탁

최 열

책소개 / 35

시의 길을 여는 새벽별 하나

정윤자

연합회소식 / 36

함께 배우는 노래 / 37

친구해 보자

90년 한해를 매듭하고 동터오는 91년을 맞이하며

김 경 태 회장

지난 88년 88탁아소의 등장 이래 전개된 올바른 탁아법을 위한 우리의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12월 14일 국회 보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자당의 영, 유아 보육법'안이 날치기로 통과되었다.

민자당의 영, 유아보육법안의 가안발표시부터 각계각층에서 많은 논란과 반대가 있었다. 이를 무릅쓰고 통과를 강행시킨 거대여당의 횡포에 우리는 다시금 크나큰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같은 일은 거대여당이 독주하는 현 정세하에서 벌이는 법개정운동의 한계를 자명하게 드러내는 것으로써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일이긴 했으나, 앞으로 전개될 탁아운동에 많은 과제와 고민거리를 안겨주고 있다.

이처럼 분노와 착잡한 심정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제 얼마남지 않은 90년 한해를 뒤돌아보면 그래도 올해처럼 탁아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사회 전반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탁아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했던 점은 한편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반면, 탁아법 싸움에 몰두하

다 보니 우리 활동의 여타부분은 상대적으로 축소된 감이 없지 않다. 그만큼 탁아법 싸움이 우리활동에 비중이 큰 싸움이기도 했지만 이제는 탁아법 싸움을 전개하면서 우리의 역량 강화에 보탬이 된 측면과 간과된 측면이 무엇인지 각 단위별로 곰곰이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한다.

그동안 우리가 활동을 펼쳐오면서 활동의 발전에 가장 많은 장애요인으로 꼽았던 것은 우리가 각자 처한 개별활동에 너무 많은 역량과 하중이 실리게 되어 탁아운동 차원의 고민이 심화되지 못한 점과 전달체계가 원활하지 못한 점을 들어왔다. 말이 쉽지 하루 10시간 이상 어린이들과 생활하고 교육하며, 개별탁아소에서 수시로 밀려드는 갖가지 행사, 회보발행, 가정방문등을 치루다 보면 전체 탁아운동의 방향성과 조직강화등을 고민하기란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오히려 일상활동에 '매몰'되어 답답하고 갑갑하다는 느낌을 가질때가 더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히 '활동'을 자임하고 나선 사람들이라면 우리 활동

에서 부딪히는 장애요인과 고민이 무엇인지를 구체화시키고, 활동하는 한사람 한사람마다 탁아운동의 올바른 관점을 세우고, 조직적 전망을 어떻게 전체와 공유하고 검증해 나가느냐를 집중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혹시 탁아일을 선택하게된 동기가 개인적인 결단이나 선택이었다고 해서 탁아운동의 전망까지 개인적으로 규정하거나 결단하려는 오류들은 없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 바쁘고 힘들수록 만나고, 고민하여, 함께 하려는 노력들 속에서 우리의 일상활동을 보다 과학적으로 조직화 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들면 자원활동가 조직, 자모회 조직 등)

이같은 노력속에서만은 전달체계의 문제점도 극복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우리 활동에 대한 전문성을 채워야 하는 점이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은 이제 악법이라 할지라도 별도의 탁아입법이 제정되어 질 만큼 탁아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높아졌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탁아소도 대거 늘어날 전망이다. 이 점에서 그간 민간 비영리 탁아소가 가진 헌신성으로 우리의 정당성만을 주장할 시기는 지났다는 점이다.

우리가 지닌 탁아운동에의

열정은 이제 우리의 정당성을 더욱 강화하고, 구체화하는 노력들로 나타나야 한다. 예를 들어 아동교육, 자모교육, 시설이나 운영상태 등 탁아의 전반에 걸쳐 올바른 탁아운동의 모델을 계속 창출하여 전체 민간 탁아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은 창조성의 문제이다.

어느 운동이나 마찬가지로 탁아운동 역시 전체 변혁운동과 항상 맞물려 나가야 함은 물론 나름대로의 독자성과 특수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후 우리 운동을 성숙시키려면 우리 운동에 적합한 여러가지 창조적이고 대중적인 운동방식이 각 지역내에서 연구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진정 원하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별도의 탁아법이 곧 가시화될 이 시기에 있어 우리의 고민은 이제 겉으로 외화된 탁아운동의 내실을 어떻게 거들 것인가로 모아져야 한다.

다가오는 91년부터 우리가 벌여야 할 과제는 많고 험난하기만 하다.

이 험난함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얼마남지 않은 90년 한해의 매듭을 똑바로 짓고 새로운 힘으로 동터오는 91년을 굳세게 맞아들이자. 전국에 있는 탁아교사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전투를 빈다!

엄마에게 일할권리를 아이에게 보호·교육받을 권리를!!!



각 지역에서 공동부모회 열리다

탁아입법과 탁아정책의 문제가 현재 각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탁아소들의 당면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러한 문제를 풀어나갈 주체인 어머니들이 지역별로 한 자리에 모여 탁아문제에 대한 전반적 교육과 우리네 아이들 비디오 시사를 통해 실천사업을 구상하는 자리가 6, 7월을 중심으로 마련되었다.

이 자리를 통해 어머니들 스스로 탁아입법과 탁아정책의 문제가 심각함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를 지역에서 공동대처하고 실천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 지역별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서명운동전개

-아동복지법 시행령 거부 및 올바른 탁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

지난 8월 중순에서 9월 말일까지 우리의 아이들과 일하는 엄마들의 평생 노동권확보를 위해 거리에서 직장에서도 동네에서 탁아소 어머니들을 중심으로 서명운동이 전개되었다.

이번 서명운동은 그동안 탁아법 문제가 사회 여론화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좀더 탁아의 문제를 홍보, 선전하고 올바른 탁아법을 만들겠다는 탁아소 어머니들과 단체들의 결의속에서 행해진 활동이었다.

특히 각 지역별로 중심가나 지하철역에서 벌인 9월 16일의 가두 서명은 탁아문제를 사회화시키고 시민들의 적극적 관심을 유도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어머니들은 더욱 강화의지와 실천력을 갖게 되었다.

총 서명자수 : 4만여명



비현실적 아동복지법 필요없다
저소득층 도와주는 탁아법 제정하라!

엄마들이 앞장서서
민간 비영리 탁아소 지켜내자!



어머니대회



올바른 탁아법 쟁취를 위한 어머니 대회

“엄마, 아이 똥똥 똥 똥 올바른 탁아법을 확보하자”

9월 23일 서울, 안산, 안양, 부천, 성남,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부산, 광주 등의 탁아소 어머니들이 건국대 체육관에서 올바른 탁아법을 만들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각 지역별로 상징 깃발과 똑같은 티셔츠를 입고 입장하는 어머니들의 모습은 너무도 당당하고 믿음직스러웠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바쁜시간을 이용해서 열심히 준비한 지역별 발표시간은 그 자리에 모인 어머니들이 하나임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자리가 되었다. 특히 인천지역의 아빠들 노래는 탁아의 문제가 어머니들만이 아닌 모두의 문제임을 확인시키는 자리로써 어머니들에게 대단한 호응과 박수를 받았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탁아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성명서 낭독과 가두 행진은 탁아소 어머니들의 실천적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앞으로 어머니들 스스로 탁아문제를 풀어갈 주체임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탁아법 토론회 열린다.

지난 11월 24일(토) 프란체스코 회관에서 탁아문제특별대책위원회 주최로 '민자당탁아법(안)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탁아법 토론회가 열렸다.

약 200여명의 인원이 방청석을 메운 가운데 진행되었던 이번 토론회에서는 여성단체연합의 이미경씨의 사회로 민자당탁아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탁탁 위 위원장인 김경태회장이 기조발제하였고 이어 민자당 신영순의원이 민자당 안에 대한 입장발표를 하였으며, 토론자로 김주숙(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성문영씨(해송아기둥지 간사), 박주현 변호사가 나와 각기 분야별로 민자당 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민자당의 핵심을 피하려는 상식이하의 답변 속에서도 학계, 법조계, 기타 단체들의 의견을 모으는 자리가 되었다.

민자당 영유아보육법 날치기 통과 규탄대회



▲ 드넓은 여의도 광장을 가로지르며 소리높이 외쳐보았다.
“엄마에게 일할권리를 아이에게 보호받을 권리를!”

▼ 민자당의 날치기통과를 규탄하는 선생님과 엄마들 앞에
선 어린이의 표정이 비장하다.
“우리애겐 마음껏 놀 수 있는 탁아소가 필요해요!”



지난 12월 16일 오후 여의도 여성백인회관에서 각계각층의 반대를 무릅쓰고 날치기로 통과된 민자당의 영유아보육법을 규탄하는 대회가 열렸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탁아문제특별대책위원회, 지역사회탁아소 자모회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대회에는 약 400여명의 일하는 어머니와 탁아소관계자들이 참가했다.

기억하는가 혜영, 용철 남매의 절식사 사건을? ▶
우리는 끝까지 올바른 탁아입법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 규탄대회의 마지막, 평화행진을 앞두고 우리의 결의를 모아 만세 3창을
외치고 있다.
“일하는 엄마, 아빠,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만세!”



우리의 아이들 우리들 손으로 지키리라!
삼엄하게 늘어진 전경들 앞을 지나 어머니들이 굳은 결의로
평화행진을 하고 있다.



민자당 영유아의 보호·교육에 관한 법률(안) 무엇이 문제인가?

탁아문제 특별대책위원회

아래의 내용은 지난 11월24일 민자당 탁아법안에
대한 토론회를 기초 발제한 글이다.

〈편집자주〉

1. 머리말

급격한 산업화와 경제활동 구조의 변화에 따라 기혼여성의 취업이 크게 늘고 있다.

88년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5%에 이른다. 반면 기혼여성이 취업시에 부딪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자녀양육의 문제로서 기혼여성의 92.6%가 탁아소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또 비취업 기혼여성의 경우에도 66.2%가 탁아문제가 해결된다면 직장을 갖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동아일보 90년 11월 7일자, 행동과학연구소-전국탁아수요 및 부모의 요구조사 연구)

이같은 현실은 이제 자녀양육의 책임이 한 개인이나 가정에서 담당하기에는 많은 한계를 드러내는 것으로써 이에 대한 사회,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각계에서 있어왔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이

반영되어 지난 89년 9월 19일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82년 삭제되었던 탁아 관련 조항이 부활되기는 했으나 시행령 개정안은 1) 지원대상의 협소성, 2) 설립주체의 문제, 3) 관련부처의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탁아문제의 해결은 현대 산업사회에서 파생되는 사회, 경제, 문화 모든면에 있어서 각 개인이 자신의 힘이나 가족만을 통하여 자녀양육의 문제를 올바르게 풀어나가기 어려운 복잡성과 필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과, 아동 역시 하나의 인격체이자 미래 공동체의 한 성원으로서 사회 공동체적 입장의 보호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극히 정상적이고 제도적인 차원에서 탁아에 대한 사회복지적 해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탁아문제의 사회

복지적 해결이라함은 지금 현실에서 발생한 제 계층의 다양한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소득능력의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인적, 시설적 서비스를 통해 비금전적 급부를 실시하는 것으로써 이를 통해 헌법 34조 1항에 보장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해주고 지원해주는 것을 말한다. 단, 탁아사업은 국가의 재정지원이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 사업으로 전개 방식에 있어서 탁아를 필요로 하는 전체아동을 대상으로 하되 시행할 때는 긴급성과 절박성이 요구되는 저소득 계층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점차 모든 계층의 아동을 확대해가는 적극적 선별주의 또는 단계적 보편주의를 채택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저소득 계층이란 법정 영세민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탁아가 절실히 필요함에도 본인 또는 가정의 책임만으로 탁아문제의 해결이 어려운 일반 저소득 계층을 말한다.

따라서 최근 민자당이 당론으로 확정시킨 영유아의 보호, 교육에 관한 법률(안) 역시 얼마나 국민의 절실한 탁아요구 수요에 부응하여 사회복지 차원으로 해결하려는가에 논의의 초점이 모아진다고 본다.

2. 민자당 영유아의 보호, 교육에 관한 법률(안)의 문제점

전문 35조 보칙 6항으로 이루어진 민자당안은 한마디로 조속한 시일 내에 탁아소의 양적인 확대를 꾀하겠다고 했으나 설립주체에 있어서의 확대만 있을 뿐 정부의 책임과 지원의지는 불투명하고 상대적으로 구체적 성격이 농후한 법안이라 볼 수 있다.

1) 국가의 책임과 의무가 희박하다.

탁아법은 현실적으로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질병, 근로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한 가정의 탁아문제를 풀어가야 함은 물론이요 더 나아가서 급변하고 있는 사회 공동체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자녀양육의 대안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국가의 재정확보 및 탁아문제를 해결하려는 책임과 의지가 분명해야 할 것이다.

민자당안은 제안이유에서 탁아수요의 급증에 따른 사회, 국가적 차원의 해결이 불가피하여 별도의 입법을 통한 보육시설의 조속한 확대 및 체계화를 꾀하여 보호자의 경제,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법안 23조에 의하면 영유아의 보호,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 이 법안 제8조에 의하면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시적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안 제24조 비용의 보조에 있어서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보호 교육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라고 임의 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결국 제3조에 의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보호자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호 교육할 책임을 진다는 조항은 국가의 책임을 부분적이고 임의적인 선에 한정해 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은 국가가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에서 탁아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책임이 극히 미약하며 국가의 사회복지에 대한 책임을 수혜자 부담원칙으로 전가하여, 국가가 책임지지 못하는 많은 부분이 민간에 의해 영리사업화할 우려를

냥을 뿐 아니라 가정이나 보호자가 탁아비용을 책임질 수 없는 아동은 방치되고 탁아비용으로 인해 생계에 압박을 받을 수 있다.

2) 지원대상의 문제(일반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의지 결여)

탁아법의 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탁아사업을 통해서 지원할 대상의 범위에 관한 것이다. 민자당안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자의 자녀에 한해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실질적으로 탁아가 필요한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등의 극빈계층이 아닌 도시저소득층, 농어촌 가정등으로서 보다 현실적인 지원대상이 설정되지 않으면 탁아법은 그림의 떡이 될 것이다.

이 법안 제27조에 보호자가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세제지원을 하겠다는 조항은 공식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 있어서는 긍정적이거나 이 경우에 있어서는 면세점 이하의 소득을 가진 부모나 비공식 영세하청업에 종사하는 저소득 부모에게는 허울뿐인 지원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극빈층의 개념을 넘어선 보다 현실적인 지원대상에 대한 사전 실태조사 및 탁아가 아동과 여성에게 주는 복지적인 차원을 고려하여 국가의 지원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3) 탁아소 규제의 문제

탁아소의 수가 탁아를 요구하는 아동에 비해 절대수가 부족한 현실에서 시급한 것은 양적인 확대와 질적 향상을 위한 올바른 지원, 육성책이다.

그러나 민자당안은 보고와 검사(제31조)를 강화하고 그에 따른 인허가 취소 조항을 두었으며 특히 제14조 4항의 경우 막연히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여, 행정부에서 편의적으로 탁아소의 존립을 위협할 소지를 넣고 있다. 벌칙에 있어서도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이하로 아동복지법 시행령보다 강화된 벌칙조항을 두고 있다. 또한 보육위원회, 보육지도원, 보육정보센터 등의 관료기구가 대폭 늘어남으로서 개별 탁아소 운영에 있어서 업무부담은 물론이요 자율성을 간섭할 소지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은 기구운영에 다른 예산 사용은 그만큼 개별 탁아소에 대한 지원규모를 축소하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같은 점은 좋은 복지제도 안에 담아야 할 '지원'은 최대, 간섭은 최소'라는 원칙에 위배되며 특히 민간부분을 장려, 육성하는데 저해가 될 수 있다.

4)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의 문제

이 법안에 의하면 탁아소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은 종사자 자격기준, 시설기준, 인허가에 관련된 사항, 지원대상, 비용보조 등을 시행령에 백지위임하고 있어 이 법안 통과 이후 행정편의적으로 법을 운용할 수 있는 소지를 넣고 있다. 법이 법다운 구속력을 가지고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모법에 최소한의 기준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5) 민간탁아소 지원 및 시설 보류의 문제

이 법안에 의하면 보육시설의 종류를 국공립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4가지로 분류하고 국공립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은 인가를 받도록 하고 가정보육시설은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가정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의 시설규모가 어떻게 되는가하는 점과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지난 6월에 있었던 민자당의 영유아 보육법(가안) 토론회에 나왔던 제안설명에 따르면 가정보육시설은 5-10인 이하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런 규정이 적용될 경우 가정보육시설은 소규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서도 보육료가 고액이 되어 중산층 이상만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민간시설은 정부의 지원이 불투명하므로 자연히 영리화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시장, 군수 등이 인정한 시설(미술학원, 유치원 등)에 탁아소를 병설할 경우는 더욱 탁아소의 전문성 및 특수성을 무시한 채 영리사업으로 흐를 수 있다.

반면에 탁아소를 필요로 하는 대다수의 도시빈민층 기혼여성이 원하는 탁아비용은 전일제가 월 2만원~5만원, 반일제가 월 1만~3만원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점을 감안할 때(동아일보 90년 9월 19일자) 영리화 탁아소가 늘어난다면 일반 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폭이 된다. 따라서 국공립시설이나 영리탁아소가 감당하지 못

하는 일반 저소득층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민간 비영리탁아소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육성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민간탁아소의 인가조항에 있어서도 일률적인 인가사항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탁아시설의 규모와 지역상황에 따른 적용기준의 세분화가 요구된다.

3. 탁아법에 바란다

이후 탁아법에 담아야 할 중요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 1) 아동을 올바르게 보호, 교육하기 위한 재정이 확실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가 강화되어야 한다.
- 2)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한 현실적인 지원기준이 마련되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재정을 사용해야 한다(예-차등보육료제 실시)
- 3)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아동교육에 있어서 아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획일적이고 통제적인 교육이 아닌 국민의 요구나 상황의 특수성에 따라 창조적인 교육의 자율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 4) 탁아사업의 공정한 관리, 감독을 위한 중립적인 민간 자율기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 5) 일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 비영리탁아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육성책이 필요하다.
- 6) 탁아법 제정에 있어 중요한 사항은 모법에 명시하여 행정편의적이거나 관주도적인 경향을 지양해야 한다.

이땅에 자라는 모든 아동은 마땅히 올바른 보호와 교육을 받아야 한다. 탁아소에

“

탁아문제의 국가 사회적 해결을 위한 초석을 준비하는 지금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탁아의 필요성이 시급하고 절박함에도 아동에게 마땅히 필요한 양질의 보호와 교육을 책임질 수 없는 계층은 생활보호대상자 등 법정 영세민이 아닌 일반 저소득층이라는 점이다.

”

다니는 아동이라고 해서 보호나 교육이나를 나누는 이분법은 사라져야 한다. 탁아소를 이용하는 아동에게 양질의 보호와 교육을 제공하려면 다양하고 창조적인 탁아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기 위한 처우개선, 적절한 시설과 환경 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같은 양질의 보호와 교육을 제공하는 관건은 그에 필요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예산의 뒷받침 없이 시설기준, 자격기준을 강화한다고 양질의 보호와 교육이 담보될 수 없는 것이다.

탁아문제의 국가 사회적 해결을 위한 초석을 준비하는 지금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탁아의 필요성이 시급하고 절박함에도 아동에게 마땅히 필요한 양질의 보호와 교육을 책임질 수 없는 계층은 생활보호대상자 등 법정 영세민이 아닌 일반 저소득층

이라는 점이다.

민자당안에서 주장하고 있는 수혜자부담 원칙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정부가 보다 획기적이고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내놓지 않은 한 많은 일반 저소득층 부모는 양질의 보호와 교육을 책임질 수 없게 되거나 탁아비용으로 인해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모든 아동에게 필요한 양질의 보호와 교육은 구두선에 불과할 것이며 이 법안의 취지에서 밝힌 가정복지 증진은 간 곳이 없을 것이다.

나아가 머리말에서 밝힌 것처럼 이제 탁아의 문제는 우리 사회 전반의 변화로 인해 전체 계층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따라서 미래사회를 이끌고 갈 우리 아동들을 위한 새로운 자녀양육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국가, 사회적으로 각별한 노력과 관심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어린이와 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윤인중 (인천, 새싹들의 방)



며칠 전 급한 일 때문에 '새벽'(18개월)이를 들쳐 업고 부랴부랴 택시를 잡아 탔다. 한손엔 새벽이를 안고, 또 한손엔 옷가방을 멘 모습으로.

이른 아침부터 설치는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이 무척 안스럽게 보였는지 기사는 흘끔

흘끔 자주 뒤를 돌아본다. 마치 독스런 마누라한테 쫓겨 난 홀아비를 동정하는 표정이다. 그것도 잠시, 우리 명콤비(새벽이와 그의 하나 뿐인 아빠)가 펼치는 멋진 동작들- 짹짹, 곤지곤지, 잼잼, 도리도리, 만세-이 재미있는지, 넌지시 말

을 건네 오는 것이 아닌가.
“이른 아침부터 애를 안고 어
디를 가는 거요?” 뭐라고 대
답할까? 기사양반 눈치대로
“마누라하고 대판하다 애 싸매
고 나오는 중이요”하려다 정색
을 하고 “이 아이 학교 가는
중입니다.”라고 말했다. 기사
는 말문이 막혔나 보다. “애가
벌써 학교엘 갑니까?”

지난 9월 23일 건국대 체육
관에서 열렸던 ‘어머니 대회’를
다시 기억하는 건 크나 큰 즐
거움이다. 왜냐하면 자식 하나
잘 둔 덕분에 난생 처음으로
무대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었
고, 열광적인 환호속에 재창까
지 하게 되었으니 말이다. 그때
그 자리에 다른 지역 아빠들이
있었다면 상당한 질투심이 일
었을 정도의 열광적 분위기였
다.

또 하나 기억나는 일은 인천
지역의 연습과정 그 전체이다.
사실 이번 대회가 열기있게 준
비되고, 진행되게 된 이유중의
하나가 현 정권에 의한 비영리
민간 탁아 폐쇄협박(아동복지법
시행령)에 있었음은 분면하다.
‘우리 아이들’, ‘우리 탁아소’
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
이 모두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동아리가 되었던 것이다. 임박
한 싸움에 대한 긴장감이 느껴
지는 준비과정이었다. 그러나
그 보다 훨씬 더 인상에 남는
것은 ‘개구장이 삼복이’, ‘우리
아이들의 나라는’ 등을 따라
부르며 함께 웃고, 함께 어울릴
수 있었던 점이다. 준비과정에
서 처음 만난 얼굴, 얼굴들이
그렇게 정이 듬뿍 느껴질 수
없었다. 노동의 하루를 마치고
늦은 시간에 만나, 못부르는
노래, 서투른 동작을 서로 나
누며, 일체감을 맛볼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

대회 당일, 여러가지의 색깔
옷으로 차려입은 각 지역의 부
모들을 만나 한바탕 잔치를 벌
인 것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태권도, 건강체조, 민속춤, 노
래극 등 다양한 형태로 드러난
각 지역의 준비내용과, 올바른
탁아법 제정을 위한 힘찬 결의
를 접하면서 ‘와 정말 열심히들
준비했구나’ 하는 감탄이 절로
나왔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이들 쉼
기라, 어머니들 움직이도록 이
마에 땀방울이 송송이 뻗 탁
아선생님들 모두에게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며 서투른 글을 마
친다.

시 사

“우루과이라운드를 온몸으로 거부한다”



“

다른 나라에서는
정부, 국회, 농민들이 힘을 합해
농업을 보호 할수 있는 정책을 세우고 있다.

우리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

■ 들어가는 말

선진강대국, 특히 세계 최대의 농산물 수출국인 미국을 중심으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4년동안 진행되고 있다. 농산물 및 서비스 분야등의 개방을 내용으로 하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되면 우리 경제는 기반부터 흔들리게 될 것이다.

단계적 시장개방과 보조금 축소로 농업부문이 타격을 입게 됨은 물론, 금융, 정보통신, 유통, 무역, 항공, 관광 등의 서비스 산업도 협상이 타결될 경우 외국 선진자본에게 지점 및 현지법인 설립, 인수, 합병 등을 허용해야 하므로 농산물 시장 못지 않은 충격을 가져오게 된다. 즉, 국내 금융기관이나 정보·통신산업이 이들 분야의 외국 다국적 기업에 대응

할 수 있을 만큼의 경쟁력을 갖추지 않는 한, 국내기업은 생산규모가 위축되거나 도산하고 말 것이기 때문이며, 영세하고 경협이 짧은 여행업이나 생계위주의 영세한 도·소매점도 선진국들의 대형점이나 연쇄점에 의해 존립기반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농업부문에 대한 전면적이고 무차별적인 개방은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우리나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분야 중에서도 가장 치열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

■ 우루과이라운드의 추진 배경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남아도는 공산품과 과잉농산물에 의한 공황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국제적 협력체계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협력체제가 바로 미국의 주도아래 1948년 설립된 GATT로서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삭감·철폐하여 국제무역의 완전자유화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목표로 한다. 그런데 80년대 이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로 GATT체제가 약화되고 서비스·지적소유권 등 신분야와 농산물에 대한 무역분쟁이 확대되자 선진국 중심으로 새로운 다자간 협상을 요구하게 되었다.

특히 미국은 자국의 농업공황과 제조업의 쇠퇴, 서비스산업의 팽창등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농산물, 서비스 산업 및 첨단 기술제품의 무역자유화를 위해 협상개최를 강력히 주장했던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추진하에 86년 9월 GATT

회원국들이 우루과이 폰다 델 에스테(Punta del Este)에서 GATT의 8번째 무역협상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우루과이라운드(U·R)라 한다.

■ 우루과이라운드 협상목표와 쟁점

우루과이라운드는 14개의 상품협상그룹과 서비스협상그룹의 15개분야로 나뉘어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주요 협상목표는 시장개방 확대, GATT규를 강화, 신분야에 대한 새로운 규범 마련 등이다.

업종의 해외진출이 쉬워지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내세우고 있으나 국내산업의 피해는 예상되는 이익에 비해 훨씬 클 것으로 예측되며 그중에서도 농업부문이 입게 될 타격은 가장 심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최대 쟁점인 농산물협상의 주요내용을 보면,

①국경조치의 폐지(관세인하, 비관세를 관세로 전환, 수입제한 품목의 자유화)

②국내농업보조정책의 감축(증산정책, 가격지지정책 등 농업생산 및 무역에 영향을 주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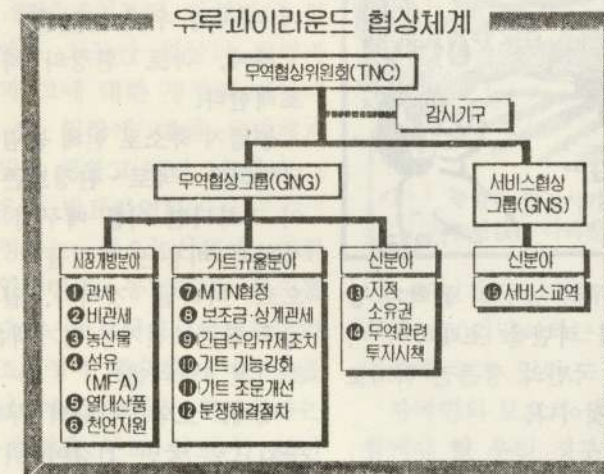
미국의 입장이 반영된 이 쟁점에 대해 논란이 많자, 농산물협상그룹의 드류의장은 '농업개혁계획에 관한 합의골격'안을 내놓았는데 미국과 케언즈그룹의 입장에 치우친 이 안대로 협상이 타결된다면 우리의 농업이 맞게 될 위기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

■ 한국농업의 위기

'농산물협상 타결없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없다'고 하는 미국의 주장대로 선진수출국 주도의 교섭이 진행된다면 농산물 수입 전면자유화로 인한 농산물 수입증가는 곧 가격폭락을 가져오고 이는 농업소득의 급격한 감소로 나타나 농업생산기반을 완전히 붕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식량자급률이 극히 낮은 수입국의 식량안전보장은 위기를 맞고 농민의 몰락이 가속화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농산물의 수입자유화율은 85%를 넘어섰고, 식량자급률도 60년대 초에는 97%였던 것이 90년도 현재에는 35%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또 76년에는 전농가의 95%가 농업소득안으로 가계충족을 할 수 있었으나 89년에는 15%로 줄어든 상황이다. 더욱이 89년도 우리나라 농축산물 수입총액은 무려 64억 9천 9백만



지금까지 20여차례의 협상을 가져왔으나 선진국과 후진국 미국과 EC국들 간에 이해차이로 타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타결되면 관세인하 및 수입제한 완화 등으로 수출이 유리해지고 건설업 등 경쟁력있는 서비스

는 보조금지급 감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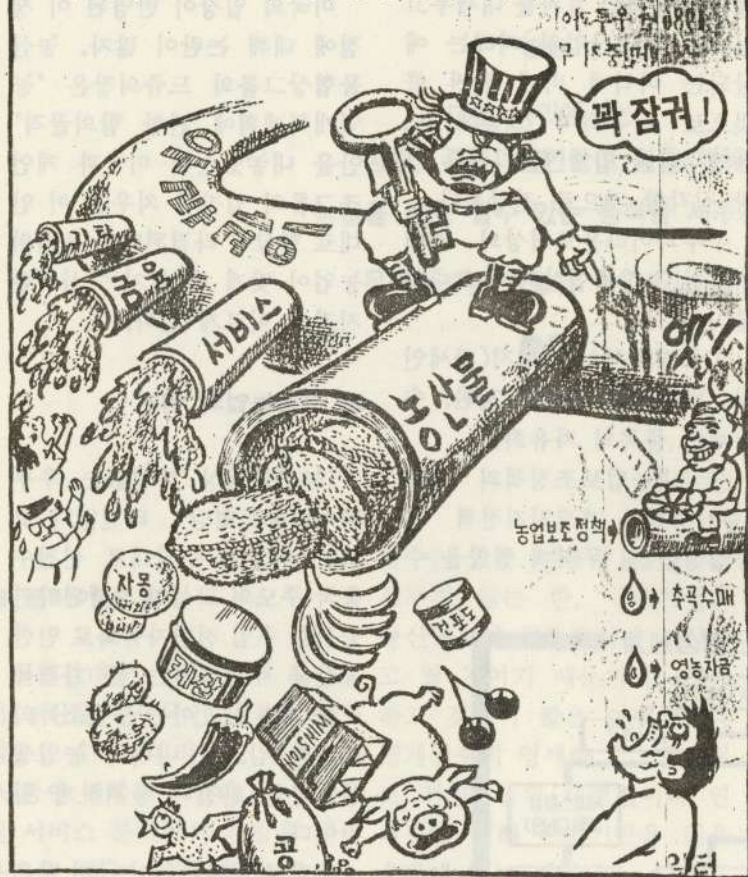
③수출보조금 감축 또는 철폐

④식품위생·동식물 검역 기준의 완화

⑤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의 고려

⑥개도국 우대문제

농업 부문 : 농산물수입 완전개방과 농업보조정책, 선제
비농업부문 : 서비스, 금융, 통신, 등의 시장개방



불(약 4조 5천억원)에 이른다. 88년 국내에서 생산한 전체 농축산물의 시장 총가격이 약 11조억인 것을 보면 그 규모가 엄청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미국 곡물 수출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카길, 콘티넨탈 등 미국계 다국적 거대 곡물상사와 식품 다국적 기업, 농업관련 다국적 기업들이 곡물시장을 장악하여 이들의 횡포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쌀, 보리, 콩 등 주요농산물의 수입이 개방

된다면 우리 농민의 몰락과 농업기반의 파탄을 초래하여 마침내 전 국민의 생존권 위기로 나타날 것이다.

■ 국민 생존권의 위기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이 타결된 경우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량실업문제와 도시문제를 야기 시킨다.

국내 현재 농업인구는 6백 78만 6천명으로 총취업자의 20%

를 담당해 왔는데 앞으로 농업고용기회가 줄어들면 심각한 실업문제를 낳아 이들 농민이 도시로 몰렸을 때는 각종 도시문제(실업, 주택, 과밀학급, 인구, 교통, 도시빈민 등)를 유발시킨 것이다.

둘째, 전국민이 식량의 불모화될 것이다.

식량의 공급을 대외에 의존하게 되면 식량이 무기화되는 오늘날과 같은 상황에서는 식량안보의 위협은 물론 주권까지 박탈당한 위험이 있다. 또한 곡물생산이 불안정해지면 곡물수출을 다국적기업에서 장악하여 결국 식량을 담보로 강대국에 예속될 우려가 있다.

셋째, 국토·환경의 파괴를 초래한다.

농경지 축소로 인해 농림업이 담당해온 국토·환경보존기능이 저하되면 이를 메꾸기 위한 사회적 비용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나타날 것이다.(일본의 경우 환경보존기능 평가액은 12조 1천 7백억엔)

넷째, 오염농산물의 무제한 수입으로 국민 건강이 위협을 당한다.

수입 농산물의 경우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먼거리와 복잡한 유통과정 등으로 생산과정의 농약살포는 물론, 수확후에도 각종 농약, 방부제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그 오염도는 상당하다. 미국의 경우 수출용 농산물은 장기보관, 수송과정에

서 농약사용을 법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런 수입농산물의 안정성을 지킬 제도적 장치는 없는 것이다.

다섯째, 지방경제의 위기와 농업용 자재산업이 도산하게 된다.

농업이 축소·포기되면 우선 농사에 쓰이는 각종 자재산업이 판로가 막혀 도산하고 대량실업사태를 초래하여 농민들의 구매력에 의존해 온 지방경제가 파괴된다.

■ 정부의 대책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86년 9월부터 진행되어 왔음에도 그동안 협상의 진행과정과 그에 대한 정부의 제안내용 및 입장에 대해 국민에게 비밀로 해왔고 90년 2월에야 그 내용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주요농산물에 대한 수입제한과 농업지원 근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국내농업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유예기간을 10년 이상 장기간 확보한다는 데 역점을 두고 있으나, 89년 11월 내놓은 협상안의 내용은, 농산물 수입 자유화에 동의하고, 국내농업지원정책을 포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협상을 강력 추진하면서도 자국의 농업생산·가격지지와 보조금에 의한 수출확대를 적극 지원하는 내용의 「91신농업법안」을 마련하고 91

농촌은 뿌리 도시는 꽃



년~95년까지 이를 추진하기 위해 550억달러라는 예산까지 마련해 놓고 있다.

자국민의 보호와 생존을 위해 힘써야 할 우리 정부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대한 대응은 너무도 비주체적이고 국민의 입장이 배제된 방안이 아닐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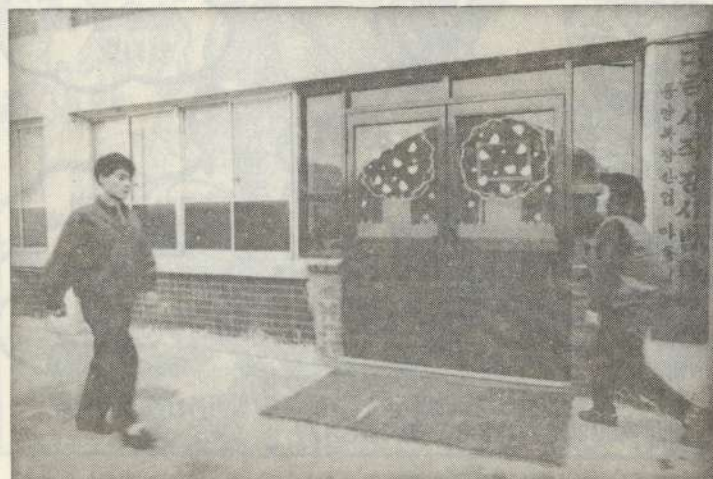
■ 맺음말

각국의 실정에 맞게 공정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GATT가

미국의 일방적인 강요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으로 인해 서비스분야 및 농산물 등의 수입개방이 한국 경제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는 상황에서 정부는 전 민중의 요구와 이해에 입각한 정책을 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농산물의 전면 수입자유화는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고 농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만큼 전국민이 온몸으로 우루과이라운드를 거부해야 할 것이다.

일터에서 탁아를 「동양복장 아가의 방」을 찾아



11월 29일—찬바람이 제법이었던 날이다.

지옥같은 서울의 교통난을 용케도 피해 우리는 경기도 미금시에 있는 직장 시범탁아소인 「동양복장 아동의 방」을 방문하였다.

아동복과 청장년복을 생산해 전량수출하는 중소기업의 수출업체로 200명의 노동자 중 80여명의 기혼여성노동자가 있는 사업장이다.

이 사업장에 탁아소가 개원한 것은 1990년 7월 7일로 현재 두분의 선생님이 계신다. 10여평 크기의 실내공간엔 생후 24개월부터 5세까지의 아이들이 열세명 있는데, 아침 8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화·금요일 8시30분)까지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물론 이 탁아시간은 엄마들의 노동시간이기도 하다.

탁아소 운영은 자모들에게 간식비와 잡비로 월 이만원을, 그외 시설비, 교육자료비, 연료비 등 탁아소 전반에 드는 비용은 회사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긴 하나 재정 책정이 전혀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지출이 원활치 않음으로 어려움이 많이 따른다고 한다. “탁아를 가장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분들은 맞벌이를 해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라 봅니다. 그런데도 이에따른 노동부의 행정이나, 기업의 인식은 형편없는 실정입니다.”

사실 노동부에서는 사업장에

탁아를 가장 필요로 하는 분들은 맞벌이를 해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가난한 사람들인데 이에 따른 노동부의 행정이나 기업의 인식은 형편없는 실정이다.



직장탁아를 장려할 뿐이지 강제성이 없어 실험적인 단계로 설정하는 모호한 입장만을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이러나 저러나 자금이 원활히 도는 대기업의 경우에는 별문

제가 되질않는다. 결국 전시행정적이고 기만적인 탁아정책의 부담감은 열악한 환경조건 속에 처해있는 중소기업의 사업장에서 노동하고 있는 부모, 활동하는 교사, 그리고 아이들에게 떨어지고 마는 것이다.

이런 어려움은 탁아소에 대한 공장내 다른 노동자들의 인식 부족에 의해 한층 가중되고 있는데 이는 탁아소에 대해 호의적이긴 해도, 탁아소에 드는 재정을 공장내 전체 노동자를 위한 복지사업으로 돌려야 된 다라는—자기살 과묵기식의 인식이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음이 현실감있게 다가왔다.

지금의 상황을 비춰볼때 불모지와 다름없는 직장탁아에 대해 이미영선생님은 공단내 비슷한 업체들이 모여 공동체 계하에 운영되는 탁아형태이거나, 노조를 통한 탁아소설립이 가장 바람직 한 것으로 보았다.

이는 재정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고립분산적으로 매몰되어 있는 현재의 직장탁아소를 연대활동 속에서 인식시켜내고, 또한 활동교사들의 노동조건 및 기혼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만들어가는데 매우 중요한 것으로 지적했다.

“엄마들이 한달에 2주에서 많으면 3주까지 잔업을 하고 있어요. 이런환경때문에 한달에 한번있는 정기자모회는 점

심시간을 이용하게 되죠”

긴 노동시간 속에서 그야말로 짬을 내 하고있는 자모회는 아이들의 이야기부터 해서 기업주와 노사문제도 자연스럽게 거론되는 자리가 된다. 잔업일수의 단축·자모들간의 동일한 생산라인(현장) 형성등 중요한 사안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동일한 생산라인 형성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생산라인이 각기 다르다는 것은 출퇴근이 각기 다르다는 것이며 한명의 엄마가 잔업을 해도 탁아교사는 그 아이를 위해 늦은시간 까지 같이 잔업에(?) 시달린다는 의미가 내포되기 때문이다. 또한 중요한 사안이 발생했을때 충분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모임의 자리가 준비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노동환경때문에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기혼여성 노동자를 위해 만들었다는 탁아소가 생색용임이 드러나면서 기혼여성의 노동력을 싼임금으로 장시간 붙잡아 묶어두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게하는, 마치 한손엔 홍당무와 또다른 한손엔 채찍을 들고 있는 모습이 연상되지 않을 수 없었다.

“문제점을 알고 있기에 반드시 자리매김이 될거예요” 어두운 얼굴을 감추지 못하는 두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직장탁

아가 안고있는 문제점이 골깊게 느껴졌지만 다부진 목소리가 한겨울 추위를 싸워 이겨내고야 마는 민들레 씨앗 같았다.

가장 바람직한 직장탁아의 형태는 비슷한 업체끼리 모여 공동체화해 운영되거나 노조를 통한 탁아소 설립의 추진이다

...

꽤 오랜시간이 지났나 보다. 잠깐이라 그런지, 익숙한 일이라 그런지, 분주하게 들이닥친 외국바이어들을 아이들은 천연덕스럽게 쳐다보고 있었다. 무슨 이야기가 오고갔는지 만족한 얼굴로 외국바이어들이 빠져나가자 아이들은 주섬주섬 옷을 입고 뛰기 시작했다.

엄마들의 일 할 권리를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기 위해 작은 씨앗으로 이곳을 지키고 가꿔나가는 선생님들을 보면서 오랜시간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는 발걸음이 찬바람으로 주춤거린다.

“힘내세요”

인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어느덧 아이들이 맨발로 나와있다.

...

민들레/생명력이 강한/그래서 어디서나 흔히 잘자라는/여러해살이 풀. 주막거리라는 버스정류장이 새삼 정겹게만 느껴지지 않음은 무슨 연유인지... 더 차가운 바람이 콧끝을 스치고 지나간다.

일본의 탁아제도

1. 역사적 배경

일본의 탁아소는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빈민아동을 위한 사회사업시설로 시작되어 민중의 활발한 보육운동에 의해 이끌어져 왔으며 민중의 의사반영도 잘되고 있는 형편이다. 일본의 보육소는 1890년에 처음으로 시작되었으며 1894년에는 다니뽕 방직회사에서 취업모의 아이들을 돌보기 위한 보육소가 생겨났다. 1947년에는 전시의 고아원을 개칭하여 보육소와 유치원으로 이원화한 법적기초를 마련하였는데, 학교교육법의 결과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 분류되어 문부성의 소관으로, 아동복지법의 결과 보육소는 복지기관으로 분류되어 후생성의 소관으로 나뉘어졌다. 1960년대 이후 국가재정손실, 보육소 교육의 질등을 이유로 일원화 운동이 전개되었으나 설립근거와 주관부처가 상이하고 수익자부담과 공적부조라는 운영면의 차이, 보육목표·보육시간·교과과정의 차이등으로 실패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원화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1950년대 이후부터 민간주도의 민주보육동맹, 일본보육연합회의 보육활동과,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보모는 보모대로 조직적 활동을 펼쳐 보육사업 육성에 전력을 다하였고 이에 호응하여 정부도 ‘최저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란 명목으로 ‘보육소조치비’를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에는 보모들의 노동조합도 탄생하여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동쟁의에 들어가기 시작하였으며 1965년에는 도쿄 무인가 보육소 협의회 결성, 1970년대에는 보육소 확충의 노력으로 무인가보육소연락협의회가 결성되었다. 이 시기에는 산업팽창에 따른 절대적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여성노동력이 대거 유입됨에 따라 여성해방운동의 이념도 한몫하여 육아의 의무를 가정의 책임으로 보는 견지에서 점차 국가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전가되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1950년대 이후 민간주도의 조직적 활동을 펼쳐 보육사업 육성에 전력을 다하였고 이에 호응하여 정부도 ‘최저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란 명목으로 ‘보육소조치비’를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에는 여성 노동력이 대거 유입됨에 따라 여성해방운동의 이념도 한몫하여 육아의 의무를 가정의 책임으로 보는 견지에서 점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전가되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ㄴ. 운영실태

전국적으로 가정탁아의 호칭이 천차만별인 것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육비도 차이가 있고 보육용품에 대해서도 개인부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기도 하는 등 일관성이 없어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에 대한 보육기준이 명확하지는 못하더라도 제도적 내용은 각 지역마다 대체로 일정형태가 있고 대부분이 대동소이하다. 설치기준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공통성을 지니고 있다.

• 설치조건-주택은 자택으로서 9.9㎡이상의 방을 보육실로서 개방해야 한다. (아동복지설치기준령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2세이하-보육실, 1인당 1.65㎡(0.5평)

2세이상-보육실, 1인당 1.96㎡(0.6평)

운동장, 1인당 3.3㎡

• 탁아모 자격조건-보모, 교사, 간호원, 보건부, 조산원의 자격을 갖거나 혹은 육아에 경험이 있어야 한다. 보육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하고 학령전 아동이 없어야 하며 자격연령은 대개 15~60세이다(기준령-탁아교사는 대학또는 전문대학졸업, 보조교사는 보모양성학교 졸업 또는 후생성의 훈련원 수료, 독학생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보모자격 시험에 합격하면 된다) 무자격자의 전문화를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고 보고서를 제출케 하기도 하고,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대학 또는 각종훈련기관에 남자보모를 지망하는 남자 학생의 수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 1인당 수탁아동수-대체로 탁아모 1인당 3명이 원칙이고 아동은 0~3세의 아동이다. (기준령-3세미만 6:1, 3세20:1, 4세이상30:1 보육협의회에서는 0~1세 31, 2세 5:1, 3세 15:1, 4~5세 20:1로 개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보조방법은 크게 분류해서 2가지가 있다. ①일률적으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보육소 보조 기준액수에 따라 어린이 1인당 얼마를 지급하거나 ②가정복지원 제도의 보육료징수 기준액표에 근거한 보육료를 정하고 위탁비와 그 차액을 보조하는 경우이다. ③방법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보조금은 지역별 구분(갑, 을, 병)에 따라 보육단가를 책정하여 소득계층에 따라 A, B, C, D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A-생활보호대상자

B-주민세 비과세세대

C-A, B계층을 제외한 소득세 비과세세대-94.91%보조

D-전년도 소득과세 수준을 5등급으로 구분하여 보조금지급(I-89.8

보조금은 지역별 구분(갑, 을, 병)에 따라 보육단가를 책정하여 소득계층에 따라 A, B, C, D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2. 보육소 현황

취업여성이 급증함에 따라 정부는 집중적이고 풍부한 공공투자를 통해 탁아소를 대량 보급함으로써 급증하는 수요에 민감하게 대처해 나갔으나 법률이 정하는 2분의 1부담을 다 이행하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초과부담을 요구하면서 마찰을 빚어 아무리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에서도 복지행정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시설인가 보육소의 수용능력부족과, 보육시간의 연장, 영아보육, 야간보육, 일일긴급보육등의 요구에 따라 계절탁아소, 벽촌탁아소, 가정복지원, 기업내 탁아소, 병원내 탁아소, 베이비호텔등 무인가 보육소가 발생·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탁아 내용면에 있어서도 공공운영방식에 따른 관료화의 문제와 지배적 가치관을 그대로 반영한 획일적 보육 양식이 나타나고 있지만 반면 제도 수립 초기부터 조직화된 민간탁아 운동의 영향으로 제도 확산에 따른 관료화나 상업화의 물결에 저항하는 육아환경을 만들어 놓은 곳도 있다.

일본은 정부주도의 시설탁아나 인가 기준에 의해 허가된 탁아소가 탁아수요 대부분을 충당하고 있지만 특수보육수요를 위해 설치된 보육제도로서의 가정 복지원제도가 있다. 다음으로 무인가이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고 있는 소규모 가정탁아소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3. 가정복지원 제도

ㄱ. 발생

가정복지원제도는 무인가이면서 지방 자치단체가 일정기준을 전제로 인정하여 민간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가장 소규모의 탁아제도로서, 일반적인 무인가보육소에서도 말할 수 없는 0~3세아를 위해 설립되었다. 가정복지원제도는 고도의 경제 성장및 산업화로 인한 여성 근로자의 급격한 증대에 대응하고 무인가 보육소 증가의 일부분으로서 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60년대 부터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이런 가정탁아를 주간리친(昼間里親), 가정보육실, 보육마마, 베이비센터, 애기홈 등으로 각각 부르고 있다.

이와 같은 가정복지원제도는 지역주민의 요구를 지방자치단체의 수준에서 실현시켜 정부의 보육행정 테두리밖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초과부담을 기본으로 대부분 수탁아부모에 의한 보육료 보조금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탁아 내용면에 있어서도 공공운영방식에 따른 관료화의 문제와 지배적 가치관을 그대로 반영한 획일적 보육 양식이 나타나고 있지만 반면 제도 수립 초기부터 조직화된 민간탁아 운동의 영향으로 제도 확산에 따른 관료화나 상업화의 물결에 저항하는 육아환경을 만들어 놓은 곳도 있다.

가정복지원제도는 지역주민의 요구를 지방자치단체의 수준에서 실현시켜 정부의 보육행정 테두리밖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초과부담을 기본으로 대부분 수탁아부모에 의한 보육료 보조금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 II-76.3%, III-60%, IV-45.76%, V-38.9%)

ㄷ. 가정복지지원제도의 문제점 및 과제

보육의 공적 책임을 명확히 하여 가정복지지원제도가 안이한 제도로 정착되는 것을 방지해야만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증액시키고 가정탁아모의 신분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가정복지원 제도는 무인가로서 일관된 기준이 없고 정부의 관리 감독권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우후죽순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며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탁아모가 혼자서 경영, 급식, 보육의 3가지 일을 처리해야만 하고 노동시간도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신분보장이 되어 있지 않고 충분한 보수도 받지 못하고 있다.

가정 복지원 제도는 지역 주민의 보육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시도이므로 그 내용과 방향을 바람직한 결과로 유도할 수 있는 것은 건전한 보육운동과 자치단체의 자세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중요한 것은 보육의 공적 책임을 명확히하여 가정복지지원제도가 안이한 제도로 정착되는 것을 방지해야만 하며 이미 있는 제도로 보육내용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증액시키고 가정탁아모의 신분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여성컬럼

아내라는 이름의 여성

이일순

(전 개나리동산 교사)

결혼하면 검은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좋은남과 함께한다는 것, 삶을 나눈다는 것, 정말 꿈도 많았고 계획도 많았다.

서로를 이해하고 평생 반려자로 사랑하겠나는 주례선생님의 물음에 서슴없이 “예”라 자신감 있게 대답도 했었다. 그러기에 떠지지 않는 눈을 부비며 채 가지지 않은 피로감에도 첫덩어리 같은 몸으로 아침준비를 서둘러하고, 남편과 출근길을 나서는 아침은 서로의 관심과 사랑으로 그 무게감은 분명 줄어들 것이라고 확신했었다. 그런 확신도 때론 그러려니, 사는 것이 다 그런것이려니 했던 생활들이 어느사인가 아이를 낳고 계속되는 일 속에서 문제점은 차곡차곡 쌓여만 가고 있었다.

같이 일을 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뻘한 살림인지라 아이를 탁아소에 보내고 하루종일

노동으로 정신없이 지내다 끝나는 하루. 여자가 집에 먼저 와있어야 화가 나지 않는다는 남편을 위해 부리나케 집으로 돌아오곤 했는데... 채 옷도 벗지 못하고 부엌으로 들어가 바쁘게 저녁준비를 하는 동안 남편은 텔레비전과 신문을 보면서 밥상이 차려지기만을 기다린다.

간간이 들려오는...재털이 좀...물좀...아직 밥 안됐어...이거 왜이리 짜... 계속되어지는 주문들.

그속에서 설거지, 청소, 빨래 등 밀린 일을 해 놓고 들어가면 어느사인가 남편은 쏟아지는

TV광고 속에서 잠들어 있곤 한다.

휴...

똑같이 공장에서 돌아와 자정이 넘도록 설거지에 방청소에 고추장 단지 뚜껑까지 마무리하는 아내를 몸종처럼 부렸음을 시인하는 어느 시인의 고백이 새삼스럽게 화를 치밀게 한다. 싸움이라도 벌어지기라도 하면 어쩔수 없이 며칠동안은 도와주는 것처럼 생색을 내다가도 이내 짜증을 내며 그만두기 일췌인 남편이라는 이름의 남성. 하늘의 절반을 쳐받들고 있다고 했던가? 정말 그렇다면 하늘의 절반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

나는 남편의 몸종이 아니고 평등하게 사랑하는 친구이며 부부라는 것을 남편은 얼마큼 공감하고 있을까. 이불을 꿰매면서 아픈 현실의 바늘에 찔린다. 남편이 잠든 이 새벽에.

식품첨가물에 찌든 우리의 식탁

최 열 (한국공해문제연구소 실장)

우리의 생활 속에서 먹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먹는다는 것 그 자체로써만이 아니라
어떻게, 무엇을 먹을 것인가 또한 매우 중요한 것이다.

탁아소에서 아이들 식단을 짜면서 어머니들이
아침 밥상을 차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먹거리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어려서부터 공해 음식을 먹으면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은 과연 건강하게 자라나고 있는 것일까!

이 글을 통해 다시한번 우리의 밥상을 떠올려 보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편집자 주)

지난 20년 동안 우리들의 식
생활은 엄청나게 변화되었다.
더 빨리, 더 편리하게 살기 위
해서 조상 대대로 맛보던 전통
음식은 하나 둘 자취를 감추고,
그대신 인스턴트·가공식품이
판을 치게 되었다. 우리가 먹는

식품의 70%가 인스턴트·가공
식품인데 문제는 대량생산된
이들 식품에는 예외없이 식품
첨가물이라는 화학물질이 들어
간다는 것이다.

식품의 부패를 막기 위해 방
부제를, 색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발색제를, 산화를 방지하
기 위해 산화방지제를, 맛을
내기 위해 화학조미료를, 그
밖에 인공감미료, 표백살균제,
소맥분개량제, 유화제, 강화
제, 산미료 등 무려 356가지의
첨가물을 사용하고 있다.

이 화학물질은 행정당국에서
모두 승인한 것이다. 소비자들
은 당국에서 승인한 것은 안전
하다고 믿고 있으며 더구나 유
명회사가 제조한 것은 해롭지
않다고 믿고 싶어한다. 그렇지
만 허가된 첨가물중 무서운 독
성이 있는 것도 있어 행정당국
이나 식품회사에서도 인정하고
있지만 사용량이 적고 피해가
적다는 이유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년간 당국으로부터
허용된 식품첨가물중 발암, 기
형성 등의 위험성때문에 금지된
것이 무려 40여 가지나 된다.
마찬가지로 현재 허용된 첨가
물이 몇년 후에는 유해하다고
판명되어 금지될지도 모르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안
전성이 완전히 판명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을 매일 섭취하고
있는 셈이다. 그것도 하루 평균
70~80가지의 화학물질을 10g
씩 먹고 있어 1년에 3.6kg, 한
평생으로치면 약 200kg이상의
첨가물을 먹는 셈이다.

식품첨가물의 많은 품목이
석유를 원료로해서 만들어지는
데 이들 식품첨가물의 특성을
알아보기로 하자.

첫째, 전 생산량이 몸에 들
어온다. 즉 생산된 첨가물의
거의 대부분이 국민의 인체에
섭취된다. 이를테면 화학조미
료가 83년 4만 4천톤 소비되었
다면 이 화학물질은 전부 우리
의 몸 속에 들어온 것이다.

둘째, 소비자를 위한 것보다
생산자를 위한 것이다. 식품업
자들은 영양강화제 등 불필요한
것을 특별히 첨가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색소와 향료를 넣어
식품에 화장을 시켜 상품화를
높여 비싸게 팔기 위해서 첨가
물을 넣으면서 '소비자를 위해
서'라고 말하고 있지만 전혀
맞지 않는 말이다.

셋째, 국민 전체에 독성이
미친다. 의약품의 경우는 독성
이 미치는 범위가 환자에 국한
된다. 그에 비하여 첨가물은 전
국민이 섭취하고 있으며 기간도
전 생애를 통해 계속 섭취하게
된다. 네째, 조상들은 먹지 않
았던 물질이다. 식품에 화학물
질을 첨가하는 것은 인간의 오
랜 역사중에서 극히 최근에 들
어와서이다. 또 현재와 같이
대량의 첨가물이 인체에 흡수된
것은 불과 10여년 밖에 안된다.
지금 어린이들은 부모들이 어
렸을 때 전혀 먹지 않았던 화
학물질을 어릴때부터 먹고 있는
셈이다.

그러면 식품첨가물중 가장
문제가 되는 몇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현대인이 가장 불안해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암이다. 암의
원인은 환경속의 화학물질 때
문인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원
인은 식품첨가물이다.

식품첨가물 중에서 발암물질
로 가장 뚜렷한 것은 발색제로
광범하게 쓰이는 아질산나트륨

(NaNO)이다. 이 물질은 햄·
소세지·베이컨 등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원료로 하는 거의
모든 제품에 포함되어 있으며
연어알, 명란에도 들어있다.

발색제는 음식색을 선명하게
하는 화학물질이다. 즉 고기나
생선알의 혈색소가 산화되거나
가열에 의해 분해되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해 사용한다. 쇠고기
나 돼지고기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붉은 색이 점차 갈색으로
변한다. 이 변화로 상품이 지
저분하게 보여 도무지 식욕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아질산나트륨이
다.

아질산나트륨은 단백질의 아
민과 반응해서 니트로조아민을
만든다. 이것이 발암물질이다.
즉 아질산나트륨 자체가 발암
물질이 아니라 아질산나트륨이
단백질과 반응해서 생성되는
것이다. 아질산나트륨으로 인
해 암이 발생된다는 것이 최초
로 증명된 것은 1956년이다. 즉
1952년에 영국의 화학회사연구
원 4명이 간경변(1명은 간암)에
걸려 동물학자 '마기'박사가
원인규명을 한 결과 이 4명에
게서 '디메칠니트로조아민'이
라는 화합물을 취급한 사실을
알아냈다. 즉 토끼와 생쥐실험
으로 이 물질을 먹이에 섞어서
준 결과 암에 걸린 것을 확인
하였다. 그후 1957년 노르웨이
에서 청어가 대량으로 잡혀 사
료를 만들기 위해 가공할 때

아질산나트륨을 첨가했다. 이 사료를 양과 밍크에게 준 결과 급성간장장애를 일으켜 사망해 그 원인을 규명한 결과 디메틸 나트로조아민 때문이었다. 또 임신 중인 어미쥐에 나트로조아민을 투여하면 출생한 새끼 쥐가 성장후 암을 일으킨다는 실험결과(독일)도 발표되었다.

독일의 유명한 암학자 돌쿨의 논문(1976년)에서도 나트로조화합물은 많은 동물에게 암을 일으키고 그 작용이 강력하기 때문에 1회 투여만으로도 암을 유발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 신생아의 뇌와 척추에 악성종양을 일으킨다는 논문도 발표되었다.

이에따라 캐나다에서는 생선과 고기의 가공시 발색제인 '아질산나트륨의 사용을 금지시켰고, 미국의 식품의약국(FDA)은 식품회사에 대해 아질산나트륨이 식품속에 다른 물질과 반응해서 발암물질로 만들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물질의 사용을 중단하도록 권고한다'라고 경고하고 있다.

암·헤모글로빈 빈혈증·구토·호흡기능 악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발색제가 광범하게 사용되는 것 중 대표적인 식품은 햄·베이컨·소세지이다. 햄·소세지는 60년대초 제품이 선보였지만 소비자 반응이 시원찮아 자취를 감추었다가 80년에 들어서면서 부터 신문, TV, 잡지 등 매스컴을 통한 대대적

광고로 인해 판매량이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86년 현재 백설표, 롯데, 진주, 대한종합식품, 한국냉장 등 8개 식품회사가 있고 시장규모는 약 1천억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엄청난 양의 햄·소세지에 발색제가 첨가된다는 점을 소비자들은 알아야 한다.

다음으로 식품첨가물 중 식품의 변질과 부패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방부제에 대해서 알아보자.

우리 조상들은 옛부터 음식물의 부패를 막기 위해 소금절임이나 건조, 훈제, 장조림, 저온보관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70년대 이후 고도성장과 더불어 인구의 도시집중과 공업화는 대량생산-대량선전-대량소비로 이어졌고, 식품의 유통과정이 길어지자 방부제를 쓰게 되었다. 그런데 방부제의 문제점은 체내의 세포에 독성을 미쳐 유전자변이 등을 통해 발색제와 마찬가지로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안전성이 입증된 방부제가 장기간 섭취시 의외의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예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일본에서 1966년 방부제로 개발되어 우리나라에서 사용되었던 AF가 사용된지 8년이 지난 1973년 발암물질임이 밝혀져 큰 충격을 준 적이 있다. 이 물질은 동물실험에서 전혀 부

작용이 발견되지 않았고 미량만 첨가해도 몇달동안 부패하지 않아 널리 사용되었었는데 발암물질임이 밝혀지자 허가취소가 되어 사라졌다. 하지만 그 부작용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발암물질이 체내에서 암세포를 만들고 그것을 증식하기 까지는 보통 5년 내지 10년의 오랜 잠복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AF의 독소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힘든 것이다.

이처럼 동물실험을 통해 안전하다고 인정받아 허가되었던 식품첨가물 중 그 후 발암성 등으로 허가취소된 품목이 지난 70년에만도 무려 51가지나 된다. 이로 미루어보아 지금 안전하다고 허용된 방부제 중에도 앞으로 문제가 되어 취소될 가능성은 언제나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른바 보존료라고 하는 14가지, 산화방지의 역할을 하는 방부제가 11가지 등 모두 25가지의 방부제가 허가되어 식품첨가물로서 사용되고있다. 이 중에서 가장 광범하게 쓰여지고 있는 방부제는 소르빈산, 소르빈산칼륨, 파라옥시안식향산, 디히드로초산나트륨, BHA 등이다.

소르빈산은 곰팡이·효모·호기성균에 대해서 광범위한 항작용을 하여 햄·소세지·젓갈·유산균 음료·잼·케찹 등에 광범하게 사용되고 있다. 소르빈산칼륨이 5~10% 첨가된

사료를 쥐에게 3개월간 주면 체중증가가 억제되고 콩팥이 커진다는 것이 실험결과 밝혀졌다.

디히드로초산나트륨은 마가린·버터·치즈·된장·유산균음료 등에 사용되고 있는 데 외국에서는 허가하고 있지 않다.

파라옥시안식향산은 간장, 식초 등에 사용되며 사료에 8% 첨가하여 3개월간 투여하면 쥐가 전부 사망한다.

BHA는 최근 라면의 유행성 논쟁의 문제가 된 산화방지제이다. '토코페롤 논쟁'이라고 불리우는 이 사건은 라면의 대명사로 불릴 정도인 삼양식품과 최근 뛰어난 빙그레가 86년 4월 3일 일간신문에 동시에 '인체에 유해가능성 시비가 일고 있는 산화방지제인 BHA·BHT대신에 천연토코페롤을 사용한다'는 용지의 광고를 낸 것이 발단이 되었다. 삼양과 빙그레가 각기 이제부터는 화학적 합성 산화방지제(BHA)를 사용하지 않고 천연토코페롤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인체에 유해하지 않게 되었다고 주장하여 여태까지 인체에 해로운 BHA를 써왔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었다. 한편 이같은 광고를 내지 말것을 종용, 확인서까지 받아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먹었던 라면을 이렇게 시끄럽게 만든 산화방지제란 무엇인가?

산화방지제(BHA: Butylated Hydroxy-Anisole)란 기름에 튀긴 식품등에 첨가되는 화학물질로 기름의 변질을 막거나 늦추어 주는 식품첨가물이다. 식용유·버터·라면등은 공기중의 산소를 흡수하거나 높은 온도를 가열하면 산화되어 산패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산패된 식품은 맛이나 냄새가 몹시 고약하고 쓰며 그것으로 인해 설사·구토 등의 급성중독 현상과 간기능의 장애를 가져오게 된다.

이때까지 라면에 첨가되었던 BHA는 원래 1948년 휘발유·석유등의 산화방지를 위해 사용하다가 1954년 부터는 식품에도 광범하게 사용되었다. 이 BHA는 일본에서 10년전부터 문제의 화학물질로서 발암성 여부로 논쟁이 일어났고 이에 따라 1978년 쥐와 토끼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게 되었는데, 1982년 2월에 나고야 시립대학의 이도교수에 의해 암이 발생되는 것이 증명되었다. 이 발표로 인해 일본은 천연 토코페롤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도 일부 대체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동안은 국내소비용 라면에는 BHA를 첨가하고 수출용에는 토코페롤을 첨가해왔는데, BHA가 토코페롤보다 아무리 값이 싸다하더라도(10배) 이는 국민의 건강을 무시한 기업행위라 아니 할 수 없다. 라면은 1950년대 일본에서

처음 개발되어 우리나라에는 63년 삼양식품이 일본 명성식품과 기술제휴해서 들여온 이래 쌀에 이은 제2의 주식으로 우리 식생활에 깊숙히 자리잡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연간 라면 소비량은 80개로 세계 1위를 차지, 라면시장 규모가 85년에는 3,500억원, 86년에는 삼양·농심·한국야쿠르트·청보·빙그레에서 생산하는 90여종이 4,500억원 매출을 목표로 라면 판매 전쟁을 하고 있다. 이들 라면은 선전하는 광고비만 해도 연 250억원이나 된다.

그러면 우리들이 가장 많이 먹고 있는 대표적인 가공식품 13가지의 방부제첨가 여부를 알아보자.

그 대상식품은 햄·소세지·조미오징어·생선묵·된장·고추장·단무지·젓갈·버터·마가린·식용유·유산균음료·간장 등 13가지이다.

이중 모든 상품에 방부제가 들어가 있는 식품은 햄·소세지·조미오징어·생선묵·단무지·젓갈·마가린·유산균음료 등 8가지 이고 나머지 5가지의 상품 중에는 첨가된 것도 있고 첨가되지 않은 상품도 발견되었다.

햄은 팽귄·진주·남부·백설·삼원농역·롯데 등 6회사 12종류를 조사해본 결과 모든 상품에서 소르빈산이 첨가되어 있었다.

소세지도 팽귄·남부·백

시의 길을 여는 새벽별하나

시는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 시가 곁들인 산문집이 도서출판 '친구'에서 나왔다.

모두 4마디로 구성된 이책은 첫째마디에는 문학과 시에 대한 정의와 형식에 대해서 둘째마디에서는 역사현실을 은폐하는 시아닌 시(?)들의 문제점을 들추어 내고 세째마디에서는 4·19 세대인 70년대 시인들을 소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네째마디에서는 과거와는 질적으로 성장한 시운동 속에 박노해·백두산·김남주를 대표적으로 꼽고 있다.

시운동의 역사적 개괄과 더불어 지은이의 시읽기에 대한 체험을 비교적 쉽게 구술한것이 독자에게는 난해한 평론집보다는 더욱 쉽게 시를 이해하고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하나의 작품을 읽는다는 것은 결코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고 이책은 이야기 하고 있다. 덧붙여 시를 읽고, 쓰는 것은 자신이 붙박고 있는 삶의 공간에 대한 진지한 성찰에서 부터, 고난받는 이웃에 대한 애뜻한 사랑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다.

시인이 되기를 꿈꾸는 모든이들, 시속에 자기 삶의 기쁨과 희망을 맛보는 사람들 모두다, 시는 그 자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는 출발임을 강조하고 있다.

역사현실 한복판에 올바르게 살아 숨쉬어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시를 읽는자, 시를 만들자 모두다.

시의 길을 여는 새벽별하나

—친구—

설·롯데·삼원농역 등 5회사 9종류에 소르빈산이 모두 첨가되어 있었다.

게맛생선묵은 한성·오양 2종류를 조사했는데 한성은 방부제 소르비톨 1.95%, 오양은 0.051%로 약 40배의 차이가 있었다.

된장은 샘표와 돼지표중 샘표는 방부제가 첨가되지 않는데 비해 돼지표는 소르빈산칼륨이 첨가되어 있었다.

단무지는 4회사 4종류 모두 소르빈산과 합성감미료인 사카린을 사용하였고, 색소도 1회사만 첨가하지 않고 3회사는 황색색소를 사용하였다.

마가린은 서울·삼립·롯데 3회사가 모두 산화방지제 BHT와 방부제 디히드로초산나트륨을 사용하고 있었다.

식용유는 해표·백설표·서울식품·롯데중 서울옥수수기름은 BHA·BHT가 각 0.01%를 사용하고 있었다.

유산균음료는 롯데·삼강·매일 등 3회사 8종류 전부 소르빈산칼륨을 첨가하고 있었으며 이외에도 합성감미료인 사카린, 색소등이 전부 첨가되어 있었다. 이들 유산균음료에는 천연과즙은 전혀 함유되지 않고 화학물질로 맛을 내었다.

간장은 롯데·삼양·샘표·몽고 등 4회사 6종류 중 삼양 100% 양조간장을 제외하고는 방부제인 파라옥시안식향산을 첨가하고 있었다.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거의 대부분의 가공식품에는 몇 가지의 식품첨가물이 들어있다. 현재 사용되는 첨가물은 행정당국에서 승인된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는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이 유명회사에 제조된 식품이므로 해롭지 않다고 믿어, 많이 먹으면서 문화생활을 영위한다고 착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은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있는 기업과 형식적인 대처만을 행하는 행정당국으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대처하는 수 밖에 없다.

이미 외국에서는 가공식품을 줄이는 운동과 식품 첨가물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유럽공동시장(E·E·C)은 지난 83년부터 모든 가공식품에 화학첨가물질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86년부터는 화학첨가물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공식 허가된 방부제인 소르빈산염이

나 인공색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식품업자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통해 발색제나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식품제조공장을 엄격한 위생관리하에 두고 유통과 판매기간의 단축과 냉장, 냉동방법을 통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행정당국도 첨가물 사용을 제한하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며 불량·공해식품의 판매로 사회문제화된 후의 엄벌주의란 결국 피해가 미치고 난 뒤이기 때문에 예방이 중점을 둔 획기적이고 현실 가능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소비자도 가공식품을 구입할 때는 첨가물여부, 유효기간, 성분과 함량등을 꼭 확인하고 사야하며, 덮어놓고 상표만 보고 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결국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소비자는 몇사람이라도 함께 모여 소그룹을 만들어 상호정보를 교환하고, 이러한 모임들이 연대활동을 통해 공해식품을 찾아내고, 시정을 요구하고, 불매운동을 한다든지 하여 식품공해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연 합 회 소 속



대성리에서 열린 하계수련회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대성리 유스호스텔에서 제9회 수련회를 가졌다.

이번 수련회는 경인 지역 뿐만 아니라 각 지방의 적극적 참여속에서 탁아활동을 하면서 어렵고 답답했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서로 의지할 수 있는 동료로써의 따뜻한 정을 나누는 보람된 시간이 되었다.

그리고 거리상 서로 교류하기 힘들었던 각 지역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과 당면한 탁아법에 대한 열띤 토론이 벌어진 임시총회는 앞으로의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장이 되기도 했다.

제4기 교육강좌를 끝낸다.

제4기 탁아활동가 교육강좌가 11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지난 11월 12일 종강하였다. 6월 25일부터 4달 18일 동안 진행된 교육강좌는 탁아운동에 대한 이론, 유아기 발달 단계

특징, 생활지도, 음악 미술교육, 효율적인 공간구성 등의 유아교육 내용과 자모회의의 의의와 운영에 대한 강의로 진행되었다.

이번 강좌를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은 (1) 현장실습에 있어서 교육생의 역할이 제대로 부여되지 않아 단순 자원봉사로서 그친 점 (2) 유아교육 내용에 있어서는 아동을 대하는 올바른 철학의 정립이 반드시 첨가되어야 한다는 점 (3) 지탁연 중요한 행사에 교육생의 조직적 참여를 유도하지 못했던 점 등이다.

수료인원 중 현장교사는 4명이었고 자원활동가 중 2명은 개원 예정이며 5명은 현재 탁아소에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다.

앞으로 전체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것은 교육강좌의 위상을 어떻게 세울 것이며 이에 보충되어야 할 내용은 어떠한 방향으로 지탁연의 향후 방향과도 맞물려 정립되어야 한다.

함께 배우는 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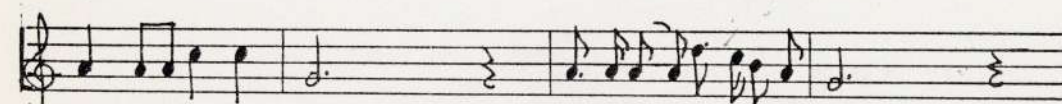
친구해 보자



- | | | | | | | | | | | |
|----------|---|---|---|---|---|---|---|---|---|---|
| 1. 작은가슴가 | 득 | 히 | 사 | 랑 | 의 | 꽃 | 을 | 피 | 워 | 서 |
| 2. 작은손을 | 모 | 두 | 어 | 사 | 랑 | 의 | 배 | 를 | 집 | 어 |



- | | | | | | | | | | | | | | |
|-----|---|---|---|---|---|---|---|---|---|---|---|---|---|
| 푸른하 | 늘 | 저 | 높 | 이 | 꽃 | 향 | 기 | 를 | 휘 | 날 | 릴 | 래 | 요 |
| 푸른강 | 물 | 저 | 멀 | 리 | 종 | 이 | 배 | 를 | 띄 | 워 | 볼 | 래 | 요 |



- | | | | | | | | | | | | | | | |
|---|---|---|---|---|---|---|---|---|-----|---|---|---|---|---|
| 북 | 쪽 | 의 | 아 | 이 | 야 | 남 | 쪽 | 의 | -아- | 이 | 야 | | | |
| 북 | 쪽 | 의 | 아 | 이 | 야 | 종 | 이 | 배 | 에 | 가 | 득 | 찬 | 사 | 랑 |



- | | | | | | | | | | | | | | | | |
|----|---|---|---|---|---|---|---|---|---|---|---|---|---|---|---|
| 우리 | 들 | 의 | 사 | 랑 | 으 | 로 | 너 | 랑 | 나 | 랑 | 친 | 구 | 해 | 보 | 자 |
| 우리 | 들 | 의 | 사 | 랑 | 으 | 로 | 너 | 랑 | 나 | 랑 | 친 | 구 | 해 | 보 | 자 |

140 160

서울특별시 용산구 남영동 127-1 호

지역 사회 타아소연합회

TEL. 792 - 7767